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 11. 29.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11. 1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4. 11. 18.

다. 상정일자: 제272회 제2차 정례회 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2024. 11. 2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감사담당관 김춘옥】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마포구 옴부즈만을 공개모집·선정하고, 마포구의회에 위촉 동의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옴부즈만 선정자(위촉 동의 대상자)

연번	성명(성별)	연령	주요경력 등
1	김진영 (여)	45세	· 종합법률사무소 봄날 대표 변호사 · 마포구 고문 변호사

연번	성명(성별)	연령	주요경력 등
2	임용호 (남)	71세	· 마포구 대표 옴부즈만 · 환경과사람(시민사회단체) 대표 · 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민생호민관
3	황성호 (남)	57세	· 마포구 옴부즈만 위원 · 한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前 마포구 건축위원회 위원

다. 참고사항

-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동의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2014. 4. 24.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3명을 위촉하고 마포구의회 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 2024. 10. 30. ~ 11. 6.까지 마포구 옴부즈만을 공개모집한 결과 10명이 지원하여 2024. 11.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류심사 결과 3명의 옴부즈만이 선정되었으며 선정과정상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옴부즈만 위촉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는 자치단체장의 임의적·편파적인 옴부즈만 선정을 예방하고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촉함으로써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위로 구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객관적 판단을 하여 행정 절차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전문성을 고려한 옴부즈만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3기 옴부즈만이 2년여 동안 63여 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각하, 소송취하 등 한정적 시간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음을 감안할 때,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축적된 경험 등이 누락없이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하여 4기 옴부즈만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는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조례안은 구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독립된 정책 수단으로 집행부의 정책 및 행정절차의 미비로 인한 민원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옴부즈만 선정 절차와 활동 체계의 독립성 및 투명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구민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여 제도적 신뢰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개선 방안을 통해 옴부즈만 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5. 토론요지: 없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 8. 기타: 없음

[별표 1]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4. 24.] [제정 2014. 4. 24. 조례 제961호]

제3조(옴부즈만 구성 등) ①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하거나 재직 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 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 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